

□ 관련법규

【 대부기간 】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1조(대부기간)
 - ① 잡종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토지와 그 정착물 : 5년
 - 2. 제1호외의 재산 : 1년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0조(대부기간)
법 제3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정착물을 대부하는 때에는 50년까지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.
 - 4.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또는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(국·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)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27조제1항·제36조제1항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제1항·제31조제1항에 불구하고 **50년의 범위내로** 할 수 있다.

【 대부료 면제 】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 - ①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2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(대부료의 면제 또는 감면)
 -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함.
 - 4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에 대부하는 경우
-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(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)
 - ⑧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 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, 제24조, 제32조 및 제3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.
-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
 - ①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전액 감면할 수 있다.
 - 마.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